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44

발의연월일: 2022. 11. 7.

발 의 자: 강민국 · 김예지 · 김태호

김형동 • 박대출 • 박덕흠

박성민 · 서일준 · 안병길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최 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윈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과 제8항"을 "제8항과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④ (생	구축·운영 등)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장
	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
	<u>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u>
	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
	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하
	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
	<u>청할 수 있다.</u>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	<u>⑥</u>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	
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	
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	<u> </u>
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u>제3항 및 제4항</u> 에	<u>제3항부터 제5항</u>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u>까지</u>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생략)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 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u>⑨</u>·<u>⑩</u> (생 략)

-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 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u>제7항과 제8</u> 항을 준용한다.
- 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 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 ·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⑨</u> <u>제8항</u>	·
	제10
제8항과 항 ③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